

□ 변경 대비표

신한TRF성장형OCIO솔루션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변경시행일: 2023년 08월 23일

투자설명서 변경 내역

- (1) 기재사항 변경
 - 1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및 운용규모 업데이트
 - 2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 3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 4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명확화
 - 5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항목	정정전	정정후
1.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및 운용규모 업데이트: 제2부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 단두연(책임운용역), 신동혁(부책임운용역) 나.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최근현황갱신(기준일: 2023년07월31일)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 단두연(책임운용역) 나.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최근현황갱신(기준일: 2023년07월31일)
2.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최근현황갱신(기준일: 직전회계연도)
2.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제3부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3부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3부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최근현황갱신(기준일: 직전회계연도 및 2023년07월31일)
2.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제5부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제5부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제5부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최근현황갱신(기간: 2022.08.01-2023.07.31)
3.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주석 신설>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주석: 증권의 대여/차입 거래의 목적
3.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다. 기타 투자위험 <신설>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다. 기타 투자위험 증권 대차거래 위험
3.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제3부 1. 재무정보	제3부 1. 재무정보 가. 요약재무정보 <주석 신설>	제3부 1. 재무정보 가. 요약재무정보 주석: - 증권대차 거래에 따른 수수료수익 또는 비용 - 주식의 매매회전율 등 -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자산별 거래비용
4.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명확화: 제2부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2부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4) 퇴직연금제도의 세제(퇴직연금 전용 종류 수익증권만 해당)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의 과세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A. 세액공제: 당해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해당 연도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해당 연도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 - 단.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해당 연도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9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공제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제2부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4) 퇴직연금제도의 세제(퇴직연금 전용 종류 수익증권만 해당)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의 과세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A. 세액공제: 당해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해당 연도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9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 단.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해당 연도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9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공제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삭제>

	<p>-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해당 연도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 +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p>	<삭제>
	<p>B. 과세 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 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아니하고, 연금 수령 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함</p> <p>C. 연금 인출 방식에 따른 과세: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연금 외 수령의 경우 과세체계가 다름. 또한 연금 수령 시 사적연금액(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은 연간 1,200만원 한도 내에서 분리과세 가능함.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 참조</p>	<p>B. 과세 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 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아니하고, 연금 수령 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함</p> <p>C. 연금 인출 방식에 따른 과세: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연금 외 수령의 경우 과세체계가 다름. 또한 연금 수령 시 사적연금액(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은 연간 1,200만원 한도 내에서 분리과세 가능함. 연금소득이 1,200만원 초과하는 경우도 종합과세 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함. (분리과세 선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p>
4.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명확화: 제2부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계속>	<p>(5)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연금저축 종류 수익증권에만 해당)</p> <p>[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 <p>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p> <p>다만 종합소득금액 및 근로소득에 따라 세액공제가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6.5%(지방소득세 포함) <p>단, 2020년 1월 1일 납입액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만50세 이상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 <p>- 분리과세한도</p> <p>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p>	<p>(5)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연금저축 종류 수익증권에만 해당)</p> <p>[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 <p>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p> <p><삭제></p>
	<p>단, 2020년 1월 1일 납입액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만50세 이상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p> <p>단,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6.5%(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공제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p> <p><삭제></p>	<p><삭제></p>
	<p><주석 추가></p>	<p>※ 연금세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통합연금포털 (https://100lifeplan.fss.or.kr)의 '연금세제안내'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5.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2부 4. 집합투자업자	제2부 4. 집합투자업자	제2부 4. 집합투자업자 -최근현황갱신
5.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p>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p> <p>가. 회사개요</p> <p>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단위: 백만원)</p> <p>라. 운용자산 규모</p>	<p>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p> <p>가. 회사개요 -최근현황갱신</p> <p>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단위: 백만원) -최근현황갱신(기준일: 직전회계연도)</p> <p>라. 운용자산 규모 -최근현황갱신(기준일: 2023년07월31일)</p>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내역

(1) 기재사항 변경

- 1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및 운용규모 업데이트
- 2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갱신

항목	정정전	정정후
1.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및 운용규모 업데이트: [요약정보] 운용전문인력	<p>운용전문인력</p> <p>-<u>단두연(책임운용역), 신동혁(부책임운용역)</u></p>	<p>운용전문인력</p> <p>-<u>단두연(책임운용역)</u></p> <p>-<u>최근현황갱신(기준일: 2023년07월31일)</u></p>
2.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갱신: [요약정보] 투자비용,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p>투자비용, 투자실적 추이(연평균 수익률)</p>	<p>투자비용, 투자실적 추이(연평균 수익률)</p> <p>-최근현황갱신</p>